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4. 계약만료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 해지를 요청 할 수 있다
6. 본인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 ④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기로 한다.
 - ⑤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 가정에 발송한다.

제2조(계약목적)

1. 나무재가복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재가보호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재가센터 그리고 보호자가 본원을 이용하는 기간동안 센터에서의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에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구분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50%	9%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25% ※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자격 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기초수급권자 의료급여	0%(면제)

2. 그 밖의 비용부담액

- 1)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 ① 식사재료비
 - ② 이 · 미용비
 - ③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

3.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2024년도 기준)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2024년도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643,700

4. 급여비용(2024기준)

- ① 방문요양의 급여비용 :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

시 간	방문요양급여	본인부담 (15%)	9%	6%
30분 이상	16,630	2,495	1,497	998
60분 이상	24,120	3,618	2,170	1,447
90분 이상	32,510	4,877	2,926	1,950
120분 이상	41,380	6,207	3,724	2,483
150분 이상	48,250	7,238	4,342	2,895
180분 이상	54,320	8,148	4,888	3,259
210분 이상	60,530	9,080	5,447	3,632
240분 이상	66,770	10,016	6,009	4,006

② 방문요양 급여비용 : 1회 방문단 급여제공시간 따라 산정

시 간	방문요양급여	본인부담 (15%)	9%	6%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6,114	3,668	2,446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7,667	4,600	3,067
60분 이상	61,490	9,224	5,534	3,689

제4조(신원인수의 권리 ·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수급가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⑦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제)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